

2001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농림부는 「2001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각 시·군 등에 시달함에 따라 월간 낙농육우에서는 낙농인들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시행지침중 축산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낙농육우농가에서는 많은 참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각 시·군청이나 협회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편집자주 -

사료 및 기자재 생산기반확충사업(자율)

I. 조사료생산기반시설

1. 시행 및 추진방향

- 초식가축(한우·젓소 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 공급 확대
- 조사료생산의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유희지 및 벗짚 등 부존 조사료자원의 적극 개발 이용
-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 공급체계 확립

2.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2004	
사업량(개소)	60,057	71,470	214,410	
사업비	총사업비	42,250	46,350	139,050
	보조	13,868	14,800	64,500
	융자	10,970	14,900	24,600
	지방비	1,693	-	-
	자부담	15,719	16,650	49,950

3.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사업

- 기반시설 : 목장 및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목로·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목책시설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비료대, 벗짚 등 암모니아처리사업
- 기계·장비 기타 : 끈포silage 제조사업, silo시설, 조사료생산장비 등

나. 지원대상

- 한우, 젓소 등 초식가축을 3년이상 사육중인 농가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협업체
- ※ 영농조합법인이나 협업체의 경우 초식가축을 사육하

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
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시오입)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뽕
짚 등 곤포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축협조합
- 제주도 마을공동목장

다.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도한 투자방지를 위
해 기 용자지원분(경쟁력강화사업, 농업경영
종합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
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이내
- 지원조건
 - 보조 및 용자 지원비율은 <표 1>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용자 조건 — 용자기간 : 15년(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금 리 : 연 5%

라. 사업 시행체계

- 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 → 사업신청서·
우선순위 심사·심의 및 예산요구(시·군 및
시·도) → 시·도별 예산배정(농림부) → 시·
군별 예산배정(시·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 사업대상자

마. 2001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4,800	14,900	29,700	-	16,650	46,350

바.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4-9434~5)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정계)

<표 1>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지원비율(%)				지 원 단 가
	지방비	보 조	용 자	자부담	
기 반 시 설					
· 목로개설					km당 45백만원(노폭 4m)
· 용수개설					공당 30백만원
· 전기시설	-	-	80	20	km당 5.5백만원
· 부지정지					ha당 5백만원
· 영구목책시설					1km당 9백만원
· 진입로개설					km당 100백만원, 선별적 지원(노폭 4m, 포장 3m)
조 사 료 생 산					
· 초지조성	-	50	50		별도시달
· 기성초지보완					
· 사료작물재배					종자·비료대 실소요액
· -종자 -비료	-	50	-	50	
· 볏짚암모니아처리					암모니아gas·주입비 실소요액 ※ 비닐구입은 지담
장 비 기 타					
· 곤포silage · silo시설					1기(50톤)당 5백만원
· 조사료 생산장비					
· 보관창고	-	-	70	30	50평이내 (평당 30만원)

주) 세부항목별 단가는 지역실적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시 시장·군
수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

- 단, 초지조성·보완은 별도 고시하는 초지조성비용이하로, 종자·비료
및 볏짚 등 암모니아처리는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실소요액) 적용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농산과(축산계)

II.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

● 종자공급원칙 ●

종자신청	보조사업자가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직접 신청
종자공급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직접공급
종자대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축협조합 등에 납부
정산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원료확인후 보조금 정산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초지조성 및 관리,
사료작물재배)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축협조
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각각 통보
- 종자신청지도
 - 사업대상자가 직접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
협회에 종자를 신청토록 지도(특히 이중신청
이 되지 않도록 지도)

-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종자 인수전에 사업대상자가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납부토록 지도
 - 보조금 : 축협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의 종자 공급실적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 확인)하고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축발기금 지급 요청
-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지원금액이 적은 1개기관 공급분에 대하여만 지원가능
 -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 종자관리법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종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종자를 구입
 - 종자구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 구입된 종자는 사업대상자에게 현물 공급
- 종자신청
 - 시장·군수가 통보한 사업대상자로부터 직접 종자 신청 접수. 단,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 신청금지
 - 이중신청한 경우 지원액이 적은 1개 기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장·군수로부터 인수
 - 사업대상자가 종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전 대상자로부터 신청토록 지도하여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농가의 신청분은 자담추진
- 종자공급
 -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신청농가에 직접 공급
 -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공급자 책임하에 종자 인계전에 사업대상 농가로부터 징수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축발기금 지급요청 확인후 농협중앙회와 보조금 정산
 -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종자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지원분을 농가로부터 선정수후 정산가능(정산시에는 반드시 사업농가 실명계좌에 입금조치)

- 시장·군수에게 농가별 정산보고

Ⅲ. 사료제조시설 및 원료구입지원

1. 시책 및 추진방향

- 반추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
- 사료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원료 수입자금 지원
- 자가배합사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

2.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9	2000	2001(예산안)
사 업 량		102	70	130
사 업 비	계	58,294	62,566	38,327
	보 조	-	325	-
	용 자	53,407	57,107	38,327
	지방비	-	195	-
자 부담		4,887	4,939	-

※ 섬유질사료제조시설 + 사료원료 수입자금 + 자가배합사료 제조

3.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 지원배경
 - 반추가축의 정상발육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조사료 급여가 필수적임에도 부존자원 부족이나 노동력 부족 등의 사유로 배합사료위주의 사육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섬유질사료는 부피가 큰 조사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수분함량이 높아 제조기술 특성상 배합사료제조업체에서는 제조공급이 어려움
- 지원대상자
 - 축협·영농조합법인·협업체 등 생산자단체, 섬유질사료제조업체, 양축농가
- 지원단가 : 450백만원(사업계획에 따라 1,000

백만원 이내에서 신청가능)

○ 지원기준

-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에 요청하는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지원(자부담은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부담이 많은자를 우선 선정)

○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 장비 및 시설비 지원

(2) 자가 배합사료 제조

○ 지원대상자

- 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양축농가

○ 지원단가

- 제조시설 : 430백만원 이내
 - 제조장비 : 23백만원(사업계획에 따라 10~40백만원 범위내 신청가능)

○ 지원조건

-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에 요청하는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 지원(자부담은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부담이 많은자를 우선 선정)

○ 지원시설의 종류

- 제조시설 : 건물(창고포함), 기계 및 부대 시설비 지원(부지구입비 제외)
 - 제조장비 : 분쇄기, 배합기, 발효기, 교반기, 급이배관, 원료탱크, 콘베어 원료계량 및 투입장치등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건축비는 제외)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계	보조	융자
계	130개소	38,327백만원	38,327	-	38,327
자가배합사료제조	123	4,457	4,457	-	4,457
- 제조시설	4	1,720	1,720	-	1,720
- 제조장비	119	2,737	2,737	-	2,737
섬유질사료 제조 시설	7	3,150	3,150	-	3,150
사료원료 수입자금	-	30,720	30,720	-	30,720

①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자가배합사료제조 :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② 사료원료 수입자금 : 연리 8%, 1년 거치 일시상환

Ⅳ.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1. 시책 및 추진방향

- 품목중심의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축산기자재의 표준화, 규격화 추진
- 축산시설 종합시스템 보급을 위한 기자재업체의 콘소시엄 구축 유도

2.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9	2000	2001	
사 업 량	7	4	5	
사 업 비	계	1,250	686	1,143
	융 자	875	480	800
	자 담	375	206	343

3.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설명

(1) 사업내용

- 축산기자재(자동급이·급수, 착유기, 파이프라인, 자동환기시설, 케이지, 축분처리기 등)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공장시설 자금지원

(2) 지원대상 : 축산기자재 생산업체

(3) 사업기간 : 2001년

나. 2001 사업비 내용(예산안)

(단위 : 백만원)

년도	사업량	사 업 비		
		계	축발기금융자	자부담
2001	5개소	1,143	800	343

○ 업체당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70% 이내

○ 지원조건 : 연리 8%,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1. 시책 및 추진방향

집중기획

-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액비로 자원화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 방류처리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大江 유역과 새만금지역등)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汚糞法”이라 한다)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신규로 해야할 대상농가에 지원
- '95년말 이전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를 보완해야 할 농가에 지원
 - ※ 汚糞法 제4조의 3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등 축산신규입지 제한지역은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기존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은 지원)

2.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9	2000	2001~2004	
사업량	3,000	2,500	9,000	
사업비	계	56,200	36,360	294,240
	보조	18,780	12,108	87,092
	융자	37,420	24,252	207,148

3.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지역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 및 새만금지역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기지원지구,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
-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분뇨처리대책지역
- 나환자 정착촌(농원) 지역
- (2) 사업대상자
 - (가) 단독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 해야 할 축산농가
 - 汚糞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기지원분을 포함한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축산분뇨 액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회원(단,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수거 계약을 체결후 지원)
-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5.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 (나) 공동시설·툽밥제조시설 등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축협조합(툽밥제조시설은 산림조합 포함), 『오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액비전문처리업체(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공동시설은 1995.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 (다) 정착촌구조개선
-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축산농가 및 한성협동회, 지방자치단체
 - 법인체·한성협동회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각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내에서 지원
 - 정착촌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5.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기계 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 (3) 사업내용
 - (가) 단독시설
 -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저장액비화시설, 퇴비사, 액비 저장조(경종농가 포함), 건조장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소형·이동식 톽밥제조기·파쇄기, 왕겨분쇄기·왕겨팽윤화 장비, 액비운반탱크(압롤박스), 스키드로드,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타, 경

운기, 축산분뇨 운반·살포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공동시설

- 부산물비료(축분퇴비)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공동저장액비화시설, 공동퇴비사, 액비저장조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바큇카, 압롤카, 축분·액비 살포차량, 적재용 파렛트, 축산분뇨운반탱크(압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 스키드로드, 왕겨 팽연화장비, 축분퇴비포장기
 - 액비전문처리업체는 바큇카, 압롤카, 액비살포차량, 압롤박스, 액비살포장비, 이동식액비 저장조 지원

(다) 정착촌구조개선 : 나환자정착촌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가)단독시설 또는 (나)공동시설

- 정착촌안의 공동시설에 한하여 생활오수·빗물과 분리된 “축산폐수전용차 집관로”와 “축분비료보관창고”는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혼합 하수관로는 제외)

(라) 톱밥제조시설 등 : 공동시설공급용 톱밥제조시설, 이동식 톱밥제조기

(마) 지원규모 및 조건

1) 축종별 축사 m²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m²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
 - 축종별 축사m²단위당 사업비단가

(단위 : 천원/m²)

축종	돼지	한·육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74	30	35	21	34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등록된 축사면적기준
- ② 젓소운동장의 비기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은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²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공사단가를 적용
- ⑤ 1995.12월말 이전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노후기계설비 보안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내에서 노후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건물은 제외)
- ⑥ 나환자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농가중 시설운영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 면적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

2)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호당·법인체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분	돼지	한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단독시설	300	200			
공동시설	1,500	800	1,000		
톱밥제조시설 등 (왕겨팽연화시설)	120				

-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고,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 ② 나환자 정착촌 : 법인체·한성협동회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 시설의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
-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④ 닭 케이지의 경우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무창계사 포함)
- ⑤ 돼지 무창돈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 전체 돈사가 무창돈사일 경우에만 1.4배를 가산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여 적용
- ⑥ 노후기계설비 보안을 위한 지원은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 노후기계설비의 교체에 따른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되, 기존 건물의 개·보수

집중기획

비는 자부담

3) 지원조건

- 단독시설 · 공동시설 · 톱밥제조시설
 - 지원비율 : 보조 30%, 융자 70%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금리 : 연 4.0%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융자 30%

4) 부대 기계 · 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 축산분뇨퇴비 처리장비 : 10백만원 이내(스키드로다는 20백만원 이내)
- 축산분뇨 운반 · 살포용차량, 축분퇴비포장기 및

2001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단독·공동시설				정책촌·톱밥제조시설				합 계			
	사업량	국비 보조	융자	계	사업량	국비 보조	융자	계	사업량	국비 보조	융자	계
부산	1	3	7	10	-	-	-	-	1	3	7	10
대구	5	53	123	176	-	-	-	-	5	53	123	176
인천	4	47	111	158	-	-	-	-	4	47	111	158
광주	3	7	15	22	-	-	-	-	3	7	15	22
대전	1	2	5	7	-	-	-	-	1	2	5	7
울산	3	5	13	18	-	-	-	-	3	5	13	18
경기	507	1,860	4,340	6,200	-	-	-	-	507	1,860	4,340	6,200
(10)	(90)	(210)	(300)	-	-	-	-	-	(10)	(90)	(210)	(300)
강원	151	579	1,351	1,930	-	-	-	-	151	579	1,351	1,930
(10)	(90)	(210)	(300)	-	-	-	-	-	(10)	(90)	(210)	(300)
충북	118	462	1,078	1,540	-	-	-	-	118	462	1,078	1,540
충남	463	1,701	3,969	5,670	-	-	-	-	463	1,701	3,969	5,670
(10)	(90)	(210)	(300)	-	-	-	-	-	(10)	(90)	(210)	(300)
전북	266	993	2,317	3,310	-	-	-	-	266	993	2,317	3,310
전남	381	1,407	3,283	4,690	-	-	-	-	381	1,407	3,283	4,690
경북	210	792	1,848	2,640	-	-	-	-	210	792	1,848	2,640
경남	279	1,041	2,429	3,470	-	-	-	-	279	1,041	2,429	3,470
제주	78	276	643	919	-	-	-	-	78	276	643	919
미통지	10	600	1,400	2,000	20	2,280	1,320	3,600	30	2,880	2,720	5,600
합계	2,480	2,828	22,932	32,760	20	2,280	1,320	3,600	2,500	12,108	24,252	36,360
(85)	(765)	(1,785)	(2,550)	-	-	-	-	-	(85)	(765)	(1,785)	(2,550)

* ① 단독·공동시설의 사업량은 잠정계획이며, 사업량은 개소당 평균 15 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출
 ② () 내서는 예비화사업의 배정액임

왕겨팽연화장비(공동시설용에 한함) : 3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유통센터(RPC포함)의 왕겨팽연화시설 · 장비 : 120백만원 이내

(4) 2001 사업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농특회계)		
		보조	융자	계
단독·공동시설	2,480	9,828	22,932	32,760
정착촌구조개선	15	2,100	900	3,000
톱밥제조시설 또는 왕겨팽연화시설	5	180	420	600
합 계	2,500	12,108	24,252	36,360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 · 신고기관

- 중 앙 : 환경부 생활오수과(02-504-9255, 500-4296)
- 시 · 도 : 환경담당부서
- 시 · 군 : 환경담당부서

가 축 개 량 사 업(공공)

I. 젓소개량사업

1.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우군검정과 젓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 · 공급 사업 연계추진
 - 국내 우량종빈우의 계획교배로 검정대상 송아지 생산
 - 당 · 후대검정을 통한 우량종모우 선발과 도입 및 정액생산 · 공급
- 유우군검정은 검정소 및 참여농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두당 일정액 보조지원
 - 정확한 개체혈통 및 능력조사와 기록유지

2.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00	2001 (예산안)	2002	2003~2005	
사업량	2	2	2	2	
사업비	계	8,294	8,034	8,593	29,137
	보조	8,294	8,034	8,593	29,137

3.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내용

- 유우군검정
 - 농협중앙회장은 검정희망 검정소 및 농가에 대하여 “젓소산유능력검정 세부실시요령”(축정 51530-823, '96.12.9)상의 구비요건을 심사하여 검정소 및 검정농가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중앙분석실을 운영하여 검정소 유성분 등의 분석 지원
 - 검정성적을 분석하여 농가 사양관리 및 경영 개선 지도
 - 각 검정소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검정결과 통보·설명 및 경영지도
- 젓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젓소능력검정을 통한 우량 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 암소와 숫소간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숫송아지에 대한 발육능력 및 외모 심사로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종모우의 후손에 대한 산유능력검정으로 보증종모우 선발
 - 보유중인 보증종모우로부터 고품질 청정정액을 생산하여 양축농가에 공급

(2) 지원내용

- 유우군검정 : 검정참여농가에 년간 두당 검정비용의 일부 보조지원
- 젓소정액생산·공급 : 시설, 검정축구입, 인건비 및 재료비등 지원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축발기금보조(기금사업비, 고정자산비)

가.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계	보조
계	2	8,034	8,034	8,034
○ 유우군검정	110천두	3,213	3,213	3,213
○ 젓소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1개소	4,821	4,821	4,821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전화 02-504-9431)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전화 041-580-3330)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젓소개량부(전화 031-965-9587)
- (사)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농축산물자조금조성지원(공공)

1. 시책 및 추진방향

- 시장주도력이 있는 수준의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 지급
- 자조금 납입 이탈자를 최소화하고, 자조금의 기금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차등지급제 시행(자조금 조성액의 50~100%)

2.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1) 배경
 - '92년부터 2000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축산(젓소, 돼지, 닭)분야 자조금제 시행
 - 개정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0.6.1)에서 자조금 적립지원 대상품목을 농산물에까지 확대(중전의 축산분야 흡수)
- 2)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0-66호, 2000. 10. 23.)
 - 축산물의 경우는 축산국 사업부서가 축종별 사육여건 등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축종을 정함

〈2000. 10. 23. 현재 고시품목(20개품목)〉

겨울배추, 감귤, 양배추, 고랭지배추, 고랭지무, 참다래, 복숭아, 포도, 양파, 미늘, 사과, 배, 파프리카, 친환경농산물,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꿀벌

3) 자조금조성단체의 범위

- 협동조합 : 농협조합, 축협조합, 인삼조합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사단법인 : 생산자·협동조합·법인경영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회원인 사단법인(그 사단법인이 회원인 사단법인을 포함함)

4) 자조금의 용도

- 소비촉진 홍보(방송·신문 광고, 전단 제작·배포, 시식회 등 이벤트 행사)
- 판로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시장개척
- 품질향상·수급조절을 위한 구성원 교육
-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 이행 경비
- 유통정보 제공 및 구성원간 유통정보화, 관측조사, 기술 및 공동상표의 개발 연구
- 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사업
- 자조금 운용상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5) 보조금 지급대상 자조금조성단체의 범위(농림부 고시 제2000-66호, 2000. 10. 23.)

- '99년도 기준으로 전국 생산액 대비 자조금조성단체 출하액이 일정을(기준출하율)을 초과하는 단체로 함

- 자조금조성단체가 출하조절 등을 통하여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출하율을 50%로 함

· 다만, 주산지가 여러 도지역에 분산되어 있어서 조직화가 어려운 등 특수성이 있다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은 기준출하율을 30%로 할 수 있음

6)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자조금 및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둠

- 구성(15인 이내) : 생산자 11인 이내(위원장 : 자조금조성단체의 장), 학계·공무원·소비자·유통전문가 각 1인

- 기능 : 사업계획안 및 자조금관리규정안 등 자조금조성단체의 자조금 관련 주요업무 심의 의결

- 회의 :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자조금 관련 업무 전반사항 분장)
- 연간 자조금 적립액(보조금 제외)의 5% 해당액(연간 1억원) 범위내에서 자조금 및 보조금을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음

나. 2001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0년 농안기금	2001년 사업비				자부담
		합계	농안기금			
			소계	보조	융자	
자조금지원	2,000	46,000	2,300	2,300	-	2,300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유통정책과(02-504-9412) : 제도총괄
-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4-9435) : 사업시행

축산물안전 및 경영안정사업(공공)

I. 축산물안전성 강화

1. 시책 및 추진방향

① 가축질병 근절대책

- 주요 가축전염병 5종(구제역 등)의 근절을 위한 민간차원의 방역활동 지원

-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

- 근절대상 :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닭 뉴캐슬병, 가금 인플루엔자

②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시설개선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설치 및 구입비 지원

2.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축질병 근절대책

(1) 사업종류

- 농장채혈 및 혈청검사 사업
- 축산농가 소득약품 공급사업
- 농가 방역교육 및 홍보사업
- 전염병 발생 신고 및 방역관리위반농가 신고포

상급 지급

-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사업

(2) 사업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세부 사업	지 원 내 용	지원기준
○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 접종요원 : 접종사술비, 차량운영비, 식비 ○ 예방접종기자재(방역복, 주사기 등) 공급	보조 100%
○ 농장채혈 및 혈청검사	○ 방역본부 시군요원의 채혈비 및 기자재 지원 ○ 검사대상 :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 오제스키병	보조 100%
○ 소독약 공급	○ 구제역 전국 일제소독을 위한 소독약 공급 ○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발생지역에 대한 소독약 공급	보조 100%
○ 교육 홍보	○ 순회교육, 리후렛, 담화문, 전문지 광고 등을 위한 소요사업비 지원	보조 50~100%
○ 신고포상금	○ 구제역, 돼지콜레라 발생신고 포상금 ○ 이동제한 위반, 예방접종 미실시 등 방역위반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당 10~100만원 지급
○ 방역지원본부 운영 및 정비	○ 사무국·도본부의 인건비 및 운영비 ○ 시군 지부의 운영비 지원	총사업비의 일부 정액보조

(3) 2001년 가축질병 근절대책 예산 (백만원)

세부 사업	사업량	지 원 사 업 비		비 고
		계	기금보조	
○ 소규모농가 예방접종	1,580천두	2,756	2,756	
○ 농장채혈 및 기자재 공급	360천두	2,420	2,420	
○ 소독약품 공급	450천호	2,988	2,988	
○ 교육 홍보	424	424		
○ 신고포상금	250건	50	50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1,215	1,215		
- 운영비	129개소	900	900	
- 장비구입비	총	315	315	
계	9,853	9,853		

※ 사업별 세부실시요령은 추후 별도 송부

II. 가축공제

I. 추진방향

- 소, 돼지, 말의 전국확대에 이은 안정적인 공제사업 추진
- 공제대상 축종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
- 공제사업 정착시까지 납입공제료의 일부 지원
- 공제사업에 대한 농가홍보와 교육 강화

2.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구 분		'99까지	2000	2001(예산안)
		사 업 량	소 돼지 말 계	98 750 2 98
사 업 비	계 보조 자부담	3,182 1,641 1,541	8,284 4,344 3,941	9,185 4,833 4,352

※ 2002년 이후 사업은 2001년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진

3.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대상가축 : 소(생후 6개월령 이상), 말(경주용 중빈말), 돼지
 - ※ 공제대상 가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공제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 결정
- 공제가입기간 : 1년 단위(월 단위도 가능)
- 공제금 지급 범위

공 통	소
- 전염병을 제외한 각종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재해(수해, 풍해, 낙뢰)로 인한 폐사	※ 부상범위 :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구
※ 정부의 재해대책 보상을 받은 경우	- 정액생산능력이 저하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종모우)
손실액의 차액 지급	
- 화재로 인한 폐사	

- 공제요율 :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지원내용 및 조건
 -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 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 관리비(소) : 축발기금 보조 3,700원/두(이표 700, 이표관리 3,000)

축산물검사 및 가축방역사업(공공)

I. 축산물 검사

1. 시책 및 추진방향

- WTO/SPS 협정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의 차



별 없는 검사를 위한 축산물 검사장비 현대화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처리를 위한 위생검사 및 관리 강화

2.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0~'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 2004년	
사업량	-	-	200점	160점	417점	
사	계	16,607	7,276	7,246	6,890	26,160
업	보 조	-	3,788	3,788	3,750	13,080
비	용 자	-	-	-	-	-
	지방비	-	3,488	3,458	3,140	13,080
	자부담	-	-	-	-	-

※ 2002년 이후 매년 4,360(검사장비 3,140, 재료비 1,220) 백만원 연차적 지원

3.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1) 축산물검사 장비 지원(26종 160점)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에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축산물가공품검사 등을 위한 축산물검사장비 구매 예산지원
- 장비내역
 - 잔류물질 검사기 등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장비 7종 29점 455.5백만원
 - 가공품 성분검사기 등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 6종 57점 1,145.5백만원
 - 체세포수 검사기 등 원유검사 장비 5종 17점 661백만원
 - 미생물분리동정기 등 식육중 미생물검사 장비 4종 24점 546백만원
 - 냉동조직절편기 등 기타 검사장비 4종 33점 333백만원

(2) 검사재료비 지원(610백만원)

- 도축검사 수행을 위한 도축검인 및 검인용 색소 구입비 지원
 - 검사대상 : 도축되는 소, 돼지 등

- 사업량 : 소 1백만두, 돼지 12백만두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원유검사공영화를 위한 검사재료비 지원 및 검사장비 검증
 - 검사대상 : 원유중 세균수, 체세포수, 유성분 (유지방)
 - 사업량 : 약 1,560천건
 - 세부검사내용
 - 원유검사 : 원유검사공영화 실시요령 참조
 - 검사장비 검증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원유검사장비 보정용 표준용액을 생산하여 원유검사 실시기관에 제공하고 원유검사실시기관은 주기적으로 자체장비 및 집유업체 장비 보정 실시
 - 검사기관
 - 원유검사 : 시·도지사 소속 원유검사 실시기관
 - 검사장비 검증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II. 가축방역

1. 시책 및 추진방향

- 구제역 재발방지 및 2001년 돼지콜레라 근절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추진 강화
- 전염병 조기 검색과 발생시 신속한 긴급방역 추진체계 구축
- 일선 가축방역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충
- 정부·민간 방역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선진국형 방역체계로 전환
- 방역시책 추진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등 제도 개선 추진
- 외래성 질병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강화

2.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두, 백만원)

	구 분	'99	'00	'01	2002~2004
가축	사업량	326,789	342,210	853,491	3,500,000
방역	예산	13,850	17,168	23,289	92,916

3.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긴급 방역재료비 : 전염병 발생지역 소독약 및 일제 소독에 소요되는 약품 공급 등
- 예방약품 등 공급 : 예방주사·검진·기생충구제, 진단키트 등 약품 공급
- 수의사 연수교육 :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 교육 실시비용 지원
- 예방접종 시술비 : 정부 지원예방약의 접종시술비 지원
- 살처분 보상 및 도태장려금 :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11종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 방역보조원, 방역장비 등 지원
- 수의과학검역원의 방역재료비, 진단액 생산, 활동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

나.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사업대상 : 시·도(군),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수의과학검역원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수준(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 국비 70%, 지방비 30%
 - 살처분보상금 등, 수의사교육, 혈청검사 사업 등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및 장비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접종 시술비 : 국비 50~60%, 지방비 40~50%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국·민·불우 초등학생에 대해 우유 급식비 전액 보조
- 낙농산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

2. 연도별 지원계획

구분	'92~'98년	'99년	2000년	2001년 (예산안)	2002~2004	
사업량	천명/일 176	185	185	210	210	
사업비	계	백만원 44,067	7,043	8,695	9,870	29,610
	보조	44,067	7,043	8,695	9,870	29,610
	융자	-	-	-	-	-

3. 2001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배경
 - 성장기의 어린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우유소비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식생활개선, 체위향상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급식신청 자격
 - 보조급식 : 초등학교 중 극빈학생 또는 불우학생
 - 일반급식 : 보조급식을 제외한 일반학생(초·중·고등학교 등)
- 급식대상자 선정
 - 보조급식
 - ◆ 읍·면·동장이 증명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
 -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불우초등학생을 추가 선정 가능(초등과정이 분리되지 않은 특수학교 불우학생의 경우 포함가능)
 - 일반급식
 - ◆ 자담으로 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나. 2001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계	보조	융자
학교우유 급식	천명/일 210	백만원 9,870	9,870	9,870	-